

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」 개정(안)

현	행	개	정	비	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I. 대출이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>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1. 자금조정대출</td> <td></td> <td colspan="2"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1%포인트를 더한 이율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2">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2">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td> </tr> <tr> <td>2. 금융중개지원대출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1.00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2">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¹⁾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</td> </tr> <tr> <td>3. 일중당좌대출</td> <td></td> <td colspan="2">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(무담보 익일물 기준)를 차감한 율(최저이율은 0%)로 하되,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</td> <td colspan="2">주: 1)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도 유보분 중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」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	분	이	율	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				1. 자금조정대출		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1%포인트를 더한 이율				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				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		2. 금융중개지원대출		연 1.00%				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¹⁾ 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		3. 일중당좌대출		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(무담보 익일물 기준)를 차감한 율(최저이율은 0%)로 하되,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				주: 1)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도 유보분 중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」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출		<p>I. 대출이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>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1. 자금조정대출</td> <td>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2. 금융중개지원대출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1.25%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2">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¹⁾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</td> </tr> <tr> <td>3. 일중당좌대출</td> <td>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</td> <td colspan="2">주: 1)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도 유보분 중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」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	분	이	율	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				1. 자금조정대출		(현행과 같음)		2. 금융중개지원대출		연 1.25%				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¹⁾ 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		3. 일중당좌대출		(현행과 같음)				주: 1)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도 유보분 중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」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출		<p>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.25%p 인상하되, 한도 유보분 중 일부 프로그램의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</p>
구	분	이	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자금조정대출		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1%포인트를 더한 이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금융중개지원대출		연 1.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¹⁾ 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일중당좌대출		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(무담보 익일물 기준)를 차감한 율(최저이율은 0%)로 하되,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주: 1)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도 유보분 중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」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	분	이	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자금조정대출	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금융중개지원대출		연 1.2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¹⁾ 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일중당좌대출	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주: 1)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도 유보분 중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」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II. 예금이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		<p>II. 예금이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III. 기타</p> <p>1. 시행일자 : 2022년 7월 13일</p>		<p>III. 기타</p> <p>1. 시행일자 : 2022년 8월 25일</p>		<p>— 시행일자 명시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